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독립유공자 서훈대상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63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21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독립유공자 서훈대상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	8
※ 참고자료	16

I. 제안경위

【민형배 의원안】

1.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4. 7. 8.
3. 회부일 : 2024. 7. 9.

【윤준병 의원안】

1.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20인
2. 제안일 : 2024. 7. 29.
3. 회부일 : 2024.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형배 의원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순국선열, 애국지사를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

한 자나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규정합니다.

이중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에 관한 해석이 모호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서훈 등 공적심사 내규에서 국권침탈을 을미사변으로 한정합니다. 이 이전에 발생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합한 예우를 위해 독립유공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1차와 3차 참여자는 이미 독립유공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정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

【윤준병 의원안】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으며, 적용시기에 있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국권침탈 시기가 법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962년 당시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에 대해서는 서훈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시기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1894년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 1895년 을미사변 · 1905년 을사조약 ·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日帝)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되었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비롯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 2건의 개정안은 1) 법 적용 대상자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포함하거나(민형배 의원안),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 시기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등이 포함되도록 정의(윤준병 의원안)하려는 것임.

민형배 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4조(적용 대상자) ----- ----- ----- -----.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u>자로서</u> ,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	1. ----- ----- ----- ----- ----- ----- ----- <u>사람</u> (「 <u>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u>

– 8 –

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u>자</u>	<u>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를 포함한다)으로서</u>-- ----- ----- -----<u>사람</u>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 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u>자로서</u>,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u>자</u>	2. ----- ----- ----- ----- -----<u>사람(「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를 포함한다)으로서</u>----- ----- -----<u>사람</u>

윤준병 의원안	
---------	--

현행	개정안
----	-----

<u><신설></u>	<u>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란</u>
--------------------------	--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u>국권침탈</u> (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생략)	<u>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 1895년 을미사변 · 1905년 을사조약 ·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를 말한다.</u> 제4조(적용 대상자) ----- ----- ----- -----. 1. -----<u>국권침탈</u> ----- ----- ----- ----- ----- ----- ----- ----- 2.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자를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 규정하면서, 그 시간적 범위를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하고 있음.²⁾

- 이에 대하여 시간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도 성격상 독립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도 서훈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표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현황³⁾

(‘24.7.24. 기준, 단위 : 명)

구 분	신청 등록 (유족 있음)	직권 등록 (유족 없음)	합 계
1차 봉기 참여자	32	190	222
2차 봉기 참여자	481	2,789	3,270
미구분	42	283	325
합 계	555	3,262	3,817

* 1차 봉기 참여자 : 1894년 3~8월 참여사실 확인
2차 봉기 참여자 : 1894년 9월 이후 참여사실 확인
미구분 : 1차 또는 2차 봉기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자료: 국가보훈부(출처: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 2건의 개정안은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그 참여자들이 서훈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독립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말함.

□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반외세 성격의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안으로는 정치와 사회개혁을 통해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를 타파하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으로 평가되고 있음.⁴⁾

○ 역사 교과서는 1894년 9월 2차 봉기에 대하여, 그 목적은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고, 이후 동학농민혁명군 일부는 을미의병에 가담하여 반침략적 항일 의병투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동학농민사건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평가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대표적인 반중세·반봉건운동”, “반침략·반제국주의 애국운동”,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반일역량 제고”, “항일의병운동의 토대구축”, “한국 근대사상 최초의 본격적 의병운동” 등 그 역사적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왔다고 한 바 있음.⁵⁾

○ 국회는 이러한 역사적 평가와 학계의 연구성과 등을 반영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04. 3. 5. 법률 제7177호)하였음.⁶⁾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4) [참고 1]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의의(교육부 김인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p.16)

5)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5헌마119 결정(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 참조.

6) 「동학농민혁명법」 제정이유: 보국안민의 기치아래 부패척결 및 신분제도의 타파와 국권회복을 위하여 일어난 근대민족운동으로서 반봉건·반외세·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것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함(법 제2조제1호).

□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 등을 고려할 때,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서훈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릴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2020년 국가보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차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결한 바 있음.

□ 다만, 동학농민혁명의 항일운동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을 국권침탈의 반대 또는 독립운동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포상심사 및 독립운동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21년 6월, 9월)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을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찬성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 위원들은 체제개혁으로 시작한 동학농민혁명은 적극적인 독립운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권침탈의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신중한 접근

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⁷⁾

[표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포상심사 현황

구분	'77년	'95년	'06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대상인원	2명	2명	3명	2명	2명	2명	5명	18명
심사결과	부의안함	심사유보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

○ 2020년 국정감사 시정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보훈부가 실시한 학계 전문가 자문 및 학술회의 개최 결과에 따르면, 1894년은 국권침탈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황으로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의 국권침탈에 대한 항일투쟁으로서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2차 동학농민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체제개혁이었으므로 항일투쟁의 성격이 있다고 하여 이를 독립운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음.⁸⁾

□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국권침탈 반대 또는 독립운동으로의 인정 여부와 그 참여자들의 서훈 대상 포함 여부는 2차 동학농민혁명의 성격, 역사학계의 의견 및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 아울러, 현행법이 독립운동 기간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7) [참고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포상심사 현황(p.17) 및 [참고 3]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독립운동 여부 자문 경과(p.18) 참조.

8) [참고 3]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독립운동 여부 자문 경과(p.18).

8월 14일까지”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건 및 활동 양상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민형배 의원안과 같이 “2차 동학농민혁명”이라는 특정 사건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2차 동학농민혁명의 독립운동 인정 여부에 대하여, 현재 학계의 입장은 신중·반대론이 다수인 것으로 보이고, ‘국권침탈’의 인정 시기를 1895년(명성황후 시해사건) 이전으로 앞당기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계의 입장과 국민 공감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2

참고 1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의의

(교육부 검인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심으로)

출판사	주요 내용
미래엔 (Mirae N)	- 안으로는 정치와 사회개혁을 통해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를 타파하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 - 동학농민군의 잔여세력은 을미의병에 가담하여 반침략적 항일 의병 투쟁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무장결사를 조직해 활동하기도 하였음(113쪽)
천재교육	- 반봉건·반외세의 성격을 띤 민족운동으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했던 반외세의 성격은 훗날 의병투쟁의 토대를 마련 - 동학 농민군의 잔여세력은 을미의병에 가담, 영학당, 활빈당 등을 결성하여 무장투쟁 계속(120쪽)
비상	- 농민군은 일본군 타도라는 반침략의 가치를 내세우며 다시 봉기(제2차 봉기). - 반봉건 성격과 반침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동학 농민군의 잔여 세력이 의병에 가담함으로써 항일 의병 투쟁으로 계승(111쪽).
해냄에듀	- 사회제도 개혁을 외쳤던 1차봉기와는 달리 2차봉기는 일본군을 몰아내자는 것이 주목표 - 동학농민군 가운데 일부는 항일의병에 가담하거나 활빈당, 영학당 등의 무장조직을 만들어 일본의 침략에 맞서는 반외세 투쟁을 이어감(115쪽)

* 교과서 모두 “동학농민운동”으로 표현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포상심사 현황

○ 포상심사 현황

계	'77년	'95년	'06년	'20년	'21년	'22년	'23년
18명	2명	2명	3명	2명	2명	2명	5명

자료: 국가보훈부

○ 포상심사 결과

연도별	심사대상	심사결과	주요 논의 내용
'77년	손화중	부의안함	○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려움
	김덕명	부의안함	
'95년	윤치문	심사유보	○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학계 입장 정리 후 재논의
	정명제	심사유보	
'06년	최시형	보류	○ 1심 : 일시보류 - 을미의병이 포상되었으므로 동학농민운동도 포상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학술적으로 학계의 입장이 완전히 정리된 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등 ⇒ 합동심에서 논의하기로 의결 ○ 합동심 : 보류 -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
	전봉준	보류	
	손화중	보류	
'20년	최시형	보류	○ 개인별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동학농민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 논의 필요
	전봉준	보류	
'21년	최시형	보류	○ '21년 6.9월 동학농민운동 포상 여부 검토를 위한 1.2심 전체 회의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려움
	전봉준	보류	
'22년	최시형	보류	○ 학계의 의미있는 입장 변화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독립운동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전봉준	보류	
'23년	최시형	보류	○ 학계의 의미있는 입장 변화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독립운동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전봉준	보류	
	손화중	보류	
	김개남	보류	
	박제억	보류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 3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독립운동 여부 자문경과⁹⁾

□ 추진배경

-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 참여자 포상신청이 수차례 있었으나, 독립운동의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학계의 신중·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그동안 미포상
 - * 포상신청 : 손화중·김덕명('77), 최시형·전봉준·손화중('06), 최시형·전봉준('20), 최시형·전봉준('21), 최시형·전봉준('22), 최시형·전봉준·손화중·김개남·박제억('23)
- ☞ '20년 3월 전봉준·최시형 공적심사에서 학계의견 청취 후 서훈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
- '20.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동학 2차봉기 참여자 서훈 필요성 지적

□ 추진경과

① 학계 전문가 자문실시('20.11.~12월/학계 전문가 6명)

반대·신중 학자 3명 / 찬성 학자 3명 자문 참여

* 학계의 찬성·반대 의견을 균형성 있게 파악하는데 주안점

- **(찬성)** 동학 2차봉기는 일본의 국권침탈에 대한 항일투쟁으로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야 함
 - 1차봉기는 체제개혁이, 2차봉기는 외세타도가 주된 목표
 - 경복궁 점령, 고종 연금, 궁궐 수비대 무력화, 청일전쟁(1894) 등은 국권침탈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
- **(신중·반대)** 항일투쟁의 성격이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개혁이었으므로 독립운동 인정여부는 심층 연구 필요
 - 2차봉기의 주된 목표가 세도정치의 난맥상 타파라는 견해도 있음
 - 일반적으로 국권침탈은 러일전쟁(1904~1905)과 을사늑약(1905) 전후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
 - 2차봉기는 반일투쟁의 속성을 지나나 국권상실 정도로 보아 독립운동이 아닌 정권타도 운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

9) 자료: 국가보훈부

② 독립운동 관련성 연구 학술회의 개최('21.5.20./한국역사연구회)

찬성 의견 연구자들로 구성

- (국권침탈) 1894년 일본의 조선 파병, 경복궁 점령 등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식민지화의 시발점
- (2차봉기의 성격) 일본군 침략에 반대하여 일어난 항일투쟁으로, 의병, 독립군으로 이어지는 항일 무장투쟁의 출발점
- (포상)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서는 2차봉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규정, 독립유공자 포상 필요
- ☞ 반면 종합토론에서는 동학 2차봉기를 근대적 항일운동(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당시 국권침탈의 성격, 그에 대한 인식, 저항의 강도 등을 좀 더 냉철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③ 공적심사위원회 논의

찬반 입장 : 반대·신중 의견이 대다수

- 1심 위원 합동회의('21.6.25) : 17명 참석, 반대·신중 15명 / 찬성 2명
* 1·2·3분과 위원 참석
- 2심 회의('21.9.9) : 10명 참석, 반대·신중 8명 / 찬성 2명

○ 반대·신중 의견

- 독립운동은 식민지 상태 또는 준(準)식민지 상태에서 국권을 수호 또는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나 모든 항일운동이 독립운동이 되는 것은 아님
- 세도정치·갑오개혁 등의 상황에서 체제개혁을 목표로 봉기한 동학은 명성황후 시해·단발령 등의 상황에서 항일독립을 표방한 의병과도 성격이 달라 적극적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국권침탈의 시기는 1904~1905년 러일전쟁과 1905년 을사조약 전후로 보는 것이 정설이며, 동학 2차봉기 참여자를 포상할 경우 정부 스스로 국권침탈의 시기를 더욱 앞당기는 결과 초래
- 이는 1894년 조선이 이미 준(準)식민지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후 진행된 대한제국의 자주적 개혁을 부정하게 됨

○ 찬성 의견

- 동학 2차봉기 직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정권을 무너뜨리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강제 연금하는 등 당시는 국권침탈이 현저한 진행된 시기
- 독립운동에는 국권이 상실된 이후 회복하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된 상황에서 수호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되며, 동학 2차봉기는 이중 후자에 해당

4] 역사교과서 집필자 자문실시('22.8.16.~22./검정 교과서 집필자 8명 전원)

찬반 입장 : 반대·신중 7명 / 찬성 1명

○ 반대·신중 의견

-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동학농민운동은 ‘제국 열강’의 침략 시도에 대한 저항운동이자 조선 내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체제개혁 운동으로 기술되어 있음
- 동학 2차봉기 직전 일본군이 일시 경복궁을 점거한 것은 사실이나 조선의 주권까지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었고, 2차봉기는 일본을 등에 업은 ‘개화세력’에 대한 반대운동의 성격이 강함
- 따라서 교과서 집필 내용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동학농민운동 참가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찬성 의견

- 독립운동의 출발점은 한국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전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1905년 러일전쟁 종전 이후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나,
- 동학 2차 봉기는 일본의 보호국화에 대한 저항이고, 2차봉기 지도자들이 일본과의 항전을 대내외에 촉구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의 성격을 일부 지님

참고 4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현황

□ 현 황

- 근거 :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동법 시행령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보훈부 훈령)
- 구성 : 2심제, 임기 2년,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

구 분	예비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1분과	2분과	3분과	특별분과	
정 원	11명	11명	11명	11명	11명
위촉위원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 당연직 : 공훈심사과장(1심 각 분과) / 보훈예우정책관(2심)

- 위원회 운영 : 삼일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등 연 3회 계기별 심사
 - 예비공적심사위원회에 3개의 독립운동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심층적 심사 실시
 -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1심 각 분과에서 서훈 의결된 안건을 심사
 - 1, 2심 모두 재적인원 1/2 이상 출석, 출석인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대상(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 ①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수여대상자 추천 여부와 추천 훈격에 관한 사항
- ② 독립운동의 공로로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취소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 ③ 공적심사와 관련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문사항

참고 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순국선열’ 정의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순국선열’ 정의

- 1939년 임시의정원은 독립운동 활동 중 희생된 순국선열을 추모하기 위해 ‘순국선열기념일’을 제정, 이후 임시정부는 매년 11월 17일 기념식을 개최
- 임시정부는 순국선열의 범위에 대해 ‘을미년 민비사건으로부터’라고 하여 1895년 이후 활동에 한정된 개념임을 밝힘

○ 사설 : 순국선열 기념함

내무부로서 밝히 가르친 순국선열의 범위를 보면, 을미년 민비사건으로부터 을사보호조약, 정미 군대해산, 경술 망국 전후, 기미 시위운동, 무장 동진의 순난, 국제사절의 희생 위인·열사의 사생취의와 및 오늘까지 국가 광복을 도모하여 일생을 노력하다가 혹은 적에게 피체되어 혹은 병들어 돌아간 이들을 일체로 기념케 하였습니다.

(『신한민보』 1941년 11월 13일)

※ 순국선열기념일 제정 경과

- 제안 : ‘39.11.21, 이청천 등 임시의정원 의원 6명이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매년 11월 17일을 전국 동포가 함께 기념할 순국선열기념일로 정할 것을 제안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212쪽;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65호(1940.2.1.); 『임시의정원 제31회 정기회의 기사록』, 1939.10~12월]
- 의결: ‘39.11.21,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212쪽;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65호(1940.2.1.); 『임시의정원 제31회 정기회의 기사록』, 1939.10~12월]
- 공포 : ‘40.12.06, 임시정부 공포([『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2006, 236쪽,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호외)

(자료: 국가보훈부)

